

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5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정이유

-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전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은 “노인복지법시행규칙”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 - 나.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 - 다.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, 난방연료비, 기능보강 사업비,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 - 라.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함(안 제5조)
 - 마.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 - 바. 군수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·보호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 제47조」
 - 나. 집행부 사전협의 : 완료
 - 다. 예산조치 : 없음
 - 라. 입법예고(군의회 홈페이지 게시) : 2009. 4. 20 ~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목적과 『노인복지법시행규칙』에 의한 경로당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『고성군 보조금관리 조례』에 의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
 -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·기능·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10조에서는 “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·보호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
이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 활성화 및 경로당 지원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각 조문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미신고, 미등록된 경로당의 보수 등의 지원방법이 있는지?
(특히 고성읍 신기마을경로당 등)
- 답 : 국내 등록된 경로당은 295개로서 지원하고 있으나 미등록된 경로당은 현재까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.
- 문 : 경로당 신축시 현재 7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지 주변의 경로당 신축 및 증축시 민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것인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
- 답 : 의원님이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신축성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
- 문 : 국내 미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? 또한 경로당 대·중·소 구분없이 지원액이 동일한데 향후 차등지급 방안은 없는지?

- ◉ 답 : 군내 경로당이 총 303개소 중 등록이 295개소 미등록이 8개소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 또한 대·중·소 구분하여 지원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.
- 문 : 동해면 내신마을내 경로당이 2개소 운영중이며 1개소는 어촌계 회관내 노인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음, 1개소 지원액을 2개소로 나눠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2개소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람.
- ◉ 답 :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5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